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16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윤재옥ㆍ김상훈ㆍ김정재

김기웅 · 최수진 · 김민전

서천호 • 서지영 • 김소희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에 대한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여전히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의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사선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의 효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높이 제한 등"을 "등"으로, "제57조 및 제60조에도"를 "제57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 ----------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5</u>7조에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 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 <삭 제> 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 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 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 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
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
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
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
배로 한다.